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내역 확인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벌칙)제4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한편, 같은 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보험회사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환자에게 해당 치료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내역과 다를 경우, 환자의 답변 등을 근거로 하여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보험회사는 민원 제기 등에 앞서 해당 진료기록 열람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기록 열람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기록 열람 제공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무관승진에 정자 이해진 서기관 전결 2022.3.29. 조은혜

협조자

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2033 (2022.03.2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72 팩스번호 044-201-5587 / hobakai78@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